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한 성 수

나. 생 년 월 일: 1946.09.22.

다. 소 속: (주)감정평가법인 경무

(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81길 9, 301호(대영빌딩, 삼성동))

2. 징계내용

가. 징 계 종 류: 업무정지 4개월 15일

나. 효력발생일: 2023.01.30. ~ 2023.06.13.

다. 사 유: 감정평가 과정에서 가치형성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, 비교 가능성이 낮은 거래사례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3년 01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